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 내용을 반영해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도록 정한 구 「도로명주소법」 조문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호)

3.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u>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u> 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구) · 읍 · 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지를 일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지번방식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 시(구) · 읍 · 면의 장은 일괄수정되지 아니한 주소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2. <u>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u> <u>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u>

<u>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 항의 절차에 따른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